

 신안산대학교	학보사 규정	규정 번호	3-1-7
		제정 일자	2004.04.26
		개정 일자	2024.3.20
		책임부서/팀·계	교무처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58조 1항에 의거하여 본 대학에 설치한 학보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제2조(명칭) 본 기관은 신안산대학교 학보사라 칭한다.

제3조(소재) 본 학보사는 신안산대학교내에 둔다.

제4조(기능) 학보사는 본교의 건학 이념인 그리스도의 사랑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학문연구 및 인격도야를 위한 교육적 촉매역할과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올바른 대학문화 창달 및 대학의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조 직

제5조(인원) 학보사는 발행인(또는 대표, 이하 “발행인”이라 한다), 주간교수, 학생편집장(이하 “편집장”이라 함) 및 학생기자 등을 둔다.

- ① 발행인은 총장으로 하고 학보사를 대표한다.
- ② 주간교수는 발행인을 보좌하며 학보사의 업무를 총괄하고, 교원 중에서 발행인이 임명한다.
- ③ 주간교수는 학보사의 편집·보도 및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- ④ 편집장은 주간교수를 보좌하며, 학생기자를 총괄한다.
- ⑤ 편집장과 학생기자는 본교 학생 중에서 별도의 전형을 거쳐 주간교수의 제청으로 발행인이 임명한다.
- ⑥ 학생기자는 정기자와 수습기자로 구분된다.
- ⑦ 주간교수는 필요에 따라 객원기자, 명예기자를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.
- ⑧ 수습기자의 정원은 해당연도 입학학과 수의 1/2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, 편집장을 포함한 학생기자의 전체 정원은 당해연도의 학과 수를 넘지 않는다. <2019.11.14. 개정>

제 3 장 운 영

제6조(신문발간) 신안산대학교 신문은 1년에 4회 이상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. <2010.6.15. 개정 5회로> <2022.6.2. 개정>

제7조(업무분담) ① 학보사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부, 취재부, 사진부, 디자인부, 웹진관리부, 신앙부 등을 두어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.

② 편집장은 이들을 총괄하고 총무부장을 선임하여 편집장을 보좌시킬 수 있다.

③ 주간교수 판단에 의해 부편집장을 선임할 수 있으며, 부편집장은 편집장 유고시를 비롯한 원활한 운영을 보좌한다. <2010.6.15개정 부편집장부문> <2019.11.14. 개정>

제8조(편집장의 업무와 자격) ① 편집장은 주간교수의 지도하에 신문을 기획·제작하며 기자의 활동을 지도 감독한다.

② 편집장은 2학년 이상의 정기자 중에서 주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발행인이 임명한다.

제9조(부장의 업무와 자격) 부편집장과 총무부장은 편집장을 보좌하며 2학년 이상의 정기자 중에서

주간교수의 제청으로 발행인이 임명한다. <2010.6.15.개정> <2019.11.14. 개정> <2022.6.2. 개정>

제10조(정기자의 자격) 정기자는 수습기자중 2,3학년 등록을 필한 재학생 중 소정의 전형을 거쳐 주간교수의 제청으로 발행인이 임명한다. <2010.6.15.개정> <2019.11.14. 개정>

제11조(수습기자의 자격) 수습기자는 소정의 전형에 합격한 1, 2학년 재학생 중에서 주간교수가 행하는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. <2010.6.15.개정> <2019.11.14. 개정>

제12조(객원기자의 자격과 처우) 본교 재학생(전공심화과정, 산업체반, 시간제 포함) 중 주간교수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. <2022.6.2. 개정>

제13조(명예기자의 자격과 처우) 본교 출신의 졸업생 중 주간교수의 제청으로 발행인이 임명하며,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. <2019.11.14. 개정> <2022.6.2. 개정>

제14조(복학후 처리) 학생기자가 복학 후 활동을 원할시 소정의 전형을 거쳐 주간교수의 제청으로 발행인이 재임명할 수 있다. <2019.11.14. 개정>

제15조(편집회의) 신문의 발간에 관한 기획, 편집 등을 검토·심의하기 위하여 주간교수는 편집회의를 개최하며, 편집장 및 학생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참석하여야 한다.

제16조(신문기사)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건학 이념에 따라 모든 기사내용은 건학 이념에 위배되지 않아야하며, 신앙칼럼을 비롯하여 대학내 화합과 참여 속에 교직원, 재학생, 동문들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한다.

제 4 장 포상 및 징계

제17조(포상) 다음 사항의 해당 기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.

1.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
2. 졸업예정자 또는 2학년 수료자(3년제 학과에 한함) 중 편집장 및 정기자로 공로가 많은 자
3. 기타 타의 모범이 된 자

제18조(징계) 다음 사항의 해당 기자에게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.

1. 본교 교칙을 위반한 경우
2. 전학기 성적이 불량한 경우(학기 평균 C학점 미만)
3. 기자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
4. 편집 및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명예를 손상케 한 경우
5. 기타 기자로서의 신분에 벗어난 행동을 한 경우

제 5 장 재 정

제19조(재정) 본 학보사의 재정은 교비와 기타수입으로 한다.

제20조(회계년도) 학보사의 모든 회계년도는 본교의 회계년도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2004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201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2022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